

「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	비 고
「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			「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2023. 10.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(2024년 1월 한도 배정 시) 부터 시행한다.</p>			- 부칙 신설
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/p>			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/p>			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
A3	혁신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 및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·제품임을 확인한 기업 -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- 국제특허등록 업체 - 신기술(NET) 또는 신제품(NEP) 마크 획득업체 - ISO, JIS, UL, CE³⁾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 및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 - 기술신용정보 대출을 받은 업체(대출금원장에 동 대출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 영업점장 명의 확인서 제출 <별지 제6호 서식>)(기술력 평가 결과 우수수준 이상(T1~T3등급)을 요건으로 함) 	A3	혁신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 및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·제품임을 확인한 기업 -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- 국제특허등록 업체 - 신기술(NET) 또는 신제품(NEP) 마크 획득업체 - ISO, JIS, UL, CE³⁾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 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 - 기술신용정보 대출을 받은 업체(대출금원장에 동 대출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 영업점장 명의 확인서 제출 <별지 제6호 서식>)(기술력 평가 결과 우수수준 이상(T1~T3등급)을 요건으로 함) 	- 표현 정비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
A5	연구개발 우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%를 초과하는 기업 <p>* 연구개발비: 대차대표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+ 손익 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·연구비, 개발비 상각액 +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</p>	A5	연구개발 우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%를 초과하는 기업. 다만, 서비스업(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E, G-N, P-S 업종)의 경우 0.5%를 초과하는 기업 <p>* 연구개발비: 대차대표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+ 손익 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·연구비, 개발비 상각액 +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</p>	- 서비스업 대상 전략지원 확대

현행			개정안			비고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	- 표현 정비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- 강원지역 주력산업 및 주요 유관기관<별표 1-1> 강원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참조)	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- 강원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<별표 1-1> 강원지역 주력산업 참조) 또는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	
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	전산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	- 표현 정비
A9	전입기업	- 강원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강원지역으로 <u>이전한 기업으로서</u> 이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중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정보통신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<별표1-2> 참조)	A9	전입기업	- 강원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강원지역으로 이전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중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정보통신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 (<별표1-2> 참조)	